##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07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김성환·김정호·허성무

윤종오 • 백승아 • 박지혜

이소영 · 서왕진 · 황정아

최민희·허 영·김기표

차지호 • 복기왕 • 위성곤

오세희 • 전현희 • 강경숙

김원이 · 김동아 · 권향엽

김 윤 · 정진욱 · 이재관

남인순 · 김영배 · 박희승

정태호 · 양부남 · 유건영

문금주 · 김영환 · 박정현

이광희 · 김남근 · 윤준병

이재강 · 염태영 · 송재봉

박범계 • 문대림 • 임미애

박홍근 · 임광현 · 안호영

김태년 • 추미애 • 김용만

황명선 • 이기헌 의원

(5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소의 생산 · 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수소에너지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기 어려우므로, 수소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확대·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 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 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 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 호 및 제12호 각각 신설).
- 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 다.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각각 신설).

- 라.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
-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의9 신설).
-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 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각각 신설).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각각 신설).
-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5조의14 및 제25조의15 각각 신설).

- 자.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 융상·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6 신설).
-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의17 신설).
- 카. 연료전지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각각 신설).
-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3항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8호)의 의 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 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를 "수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수소에너지"란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 12. "수소에너지 설비"란 물 또는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산업통 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부는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수소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 2. 수소에너지의 연구 · 개발 및 기술평가
- 3. 수소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 · 인증 및 사후관리
- 4. 수소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 5.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 6.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 8.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 9.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 10. 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 11.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 13. 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7조의3(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있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2. 국공립연구기관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인력·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소전문기업에"를 "수소전문기업 또는 수소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로 한다.

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 제25조의9(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수소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수 있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
  -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수 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 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5조의11(보험·공제 가입) ① 제25조의10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12(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수소에너지 관련 기 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

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 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제25조의20에 따른 사업의 실시기관
  -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14(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 2. 실용화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 3. 그 밖에 수소에너지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수소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 거나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수소에너지 설비와 그 부 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수소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 제25조의15(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7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 수소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 3.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 4. 그 밖에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16(재정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25조의9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25조의10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5조의17(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하 "수소경제이행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수소경제이행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 2. 수소경제이행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 3. 수소경제이행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 4. 수소경제이행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 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 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18(하자보수)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수소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19(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5조의14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소에너지 설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 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 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20(사업의 실시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 2. 제25조의10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 3. 제25조의12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 4.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 · 관리
- 5. 제25조의15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
   관리
- 6. 이미 보급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 · 관리
- 8. 제28조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통계관리
- 9. 국내외 조사 · 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 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 11. 그 밖에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 중 "진흥전담기관"을 "공단, 진흥전담기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연료전지"란 <u>「신에너지 및</u>	6 <u>수소</u>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	
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	
다.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1. "수소에너지"란 수소의 화
	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
	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
	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
	는 에너지를 말한다.
<u>&lt;신 설&gt;</u>	<u>12. "수소에너지 설비"란 물 또</u>
	는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연료전지, 수소가스
	터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제7조(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 제' 한 재원의 확충) ① (생 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 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 이행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u>공공기</u>관
  - 2. (생략)
  - ③ ④ (생 략)

<u><신 설></u>

세7조(수소경제 이행 족진을 위
한 재원의 확충) ① (현행과 같
<u> </u>
②
1
<u>공공기관</u>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는 연료전지 등 수소에
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u>한다.</u>
세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
5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수소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 2. 수소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 3. 수소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 ·인증 및 사후관리
- 4. 수소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5.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 6.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u>양성</u>
-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지원
- 8.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 급사업
- 9.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0. 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 11.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

   품의 공용화 지원
- 13. 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의3(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u>공공기관</u>
- 2. 국공립연구기관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 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 합
-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

② (생 략) <신 설>

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出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 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사용 등) ① ----------수소전문기업 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

용・보급 촉진

제25조의9(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의2 각 호의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수소에너지를 외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
-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 기관
-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 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
  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
  할 때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
  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소에너지를 수 있다.
-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수소에너지 설비 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 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 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 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 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 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5조의11(보험·공제 가입) ①
  제25조의10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
  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

     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

<신 설>

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5조의12(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소에너지 설

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 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제25조의20에 따른 사업의 실시기관
-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 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 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
   ・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5조의14(보급사업) 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 다.

1.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

사업

- 2. 실용화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 3. 그 밖에 수소에너지 설비 기 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 된 수소에너지 설비가 설비인 증을 받거나 수소에너지 기술 의 국제표준화 또는 수소에너 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수소에너지의 보 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 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15(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자 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7조의2 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 에 드는 자금의 융자
- 2. 수소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 3.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의교육 및 홍보
- 4. 그 밖에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 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16(재정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25조의9에 따라 권고를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이용・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25조의10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경우 금융상・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의17(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수소발 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 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하 "수소경제이행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수소경제이행사업에 따른 채

   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 2. 수소경제이행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 3. 수소경제이행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 4. 수소경제이행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조달 알

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 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사업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 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 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 업
-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 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 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25조의18(하자보수) ① 수소에 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수소에너지 설비의 소

유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9(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 이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5조의14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소에너지 설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 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 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20(사업의 실시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
  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수 있다.
  - 1.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소에너 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 2. 제25조의10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 3. 제25조의12에 따른 수소에너 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 4.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 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관 리
  - 5. 제25조의15에 따른 수소에너 지 설비 기술의 사업화에 관 한 지원·관리
  - 6. 이미 보급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 8. 제28조에 따른 수소산업 관 련 통계관리
- 9. 국내외 조사 · 연구 및 국제 협력 사업
- 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 6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 11. 그 밖에 수소에너지 및 수 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 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 이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을 위하여 수소에너지 분야 특 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를 지정하여 육성 · 지원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② (생 략)

<신 설>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기관, 관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있다.

②
<u>공단, 진흥전담기관</u>